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
[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2. 10. 12. 2022누1307]

【전문】

【원고, 항소인】 원고 (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종)

【피고, 피항소인】 익산세무서장

【제1심판결】 전주지방법원 2022. 1. 26. 선고 2021구단470 판결

【변론종결】2022. 9. 14.

【주 문】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0. 11. 5.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,169,070원(가산세 19,373,039원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【이 유】1.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사정들과 추가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양도가액 산정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.

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11~12행의 "구 소득세법"을 "소득세법"으로, 제5쪽 제19~20행 "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"을 "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20. 12. 22.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"으로, 제6쪽 제3행을 "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(2019. 3. 29.) 전후로 3개월 내인 2019. 3. 25.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"로, 제5쪽 별지 관련 법령 중 "■ 국세기본법 시행령" 부분을 별지와 같이 각 고치고, 제3쪽 제5~6행의 "원고와 주식회사 ○○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함은 인정한다.

"를 삭제하며,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(별지 및 약어 포함)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조세법률주의상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, 제5항은 경정결정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, 부당행위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경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,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, 제3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1) 양도소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이란,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

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(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두50686 판결 등 참조), 실질과세 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(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5누13296 판결 등 참조).

2)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한 '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'에는 부당행위계산 기준이 포함되고,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필요한 기준에는 양도자산의 '시가'에 관한 평가 규정이 포함된다.

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는 "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", 즉 저가양도행위를 부당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새로이 계산할 수 있게 된다(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,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양도자산의 '시가'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 규정들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.

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1조를 양도소득금액 계산 근거규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,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, 제5항에 따라 새로이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.

3)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(2020. 12. 22.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토대로 양도소득금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)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은 주식회사 ○○의 주주인 적이 없고, 임·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는 등 위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,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를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"제101조에서 '특수관계인'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,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

"고 규정하고 있고,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본인과 '6촌 이내 혈족', '4촌 이내 인척' 등을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열거하면서,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본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또한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되,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위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,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% 이상을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위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,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0%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, 주식회사 ○○은 원고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동생과 그 배우자가 합계 발행주식총수의 100%를 출자한 법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주식회사 ○○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.

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식회사 ○○의 주주구성과 거래 상대방, 양도가액(시가의 약 78%), 거래시점 등에 비추어 위 양도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위 의제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○○은 원고가 직접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(원고는 제1심에서는 주식회사 ○○과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의 하자에 관하여만 다투었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러한 주장을 '여론(餘論)'으로 추가하였다),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[별지 생략]

판사 백강진(재판장) 이인민 강지엽